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사 보 고 서

2014. 4. 14. 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4년 4월 3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4월 9일

라. 상정일자: 제18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

제1차 회의(2014년 4월 11일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 : 안전건설국장 김숙희)

가. 제안이유

○ 교통민원신고에 대한 심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운수관계자 등 이해관계자의 심의위원회 참여 배제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의 객관 성 및 공정성을 보다 확고히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: 10명 8명 (안 제3조제1항)
-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(안 제3조제2항)
 - 운수 및 운송사업체 (조합,단체)관련자 위촉 제외

-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제4항)
 - 심의대상과 직·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심의 참여 배제
- 심의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 -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결정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이태선)

○ 그 동안 교통 불편사항 등의 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·운영 중인 교통 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이해관계자인 운수사업체 등 임직원이 위 원으로 위촉되어 직접 심의에 참여함으로써 교통불편신고 민원처리에 대 한 과태료 처분율 저하 등 공정성이 저해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문제점 이 발생함.

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3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원회 운영에 따른 이해관계자 참여를 배제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으며, 또한 서울시에서는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운수관계자 배제 협조 요청이 시달되어 위원회 심의 시 운송사업조합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 참여를 배제 토록 하는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시행하도록 함.

○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 점은 없다고 판단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 293 호 제출연월일: 2014. 4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교통민원신고에 대한 심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운수관계자 등이해관계자의 심의위원회 참여 배제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보다 확고히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: 10명 → 8명 (안 제3조제1항)

나.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(안 제3조제2항)

○ 운수 및 운송사업체 (조합,단체)관련자 위촉 제외

다.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제4항)

- 심의대상과 직·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심의 참여 배제라. 심의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 -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결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(1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(2) 부패영향평가 : 평가실시(의견반영)

(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실시(의견없음)

라. 기 타

(1) 입법예고(2014.3.6.~2014.3.26 20일간)결과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"10명"을 "8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"을 "심의와 관련하여 직 ·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운수 · 운송사업체(조합,단체)관련자를 제외한 교통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한 시민(단체)대표 또는 일반시민"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7조제4항 중 "직접적인"을 "직·간접적인"으로 하고, "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"를 "심의에"로 한다.

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고,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, 출석위원명, 심의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심의결과 처리)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.

제12조 중 "범위내"를 "범위"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 구성에 대한 적용례)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 위원 중 심의와 관련하여 직·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운수·운송사업체(조합,단체)관련 위원은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.

신 • 구조문 대비표

혀 했 개 정 안 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 제3조(구성) ① ------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 ----- 8명 -----워으로 구성한다. ②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, 부위원장 은 교통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와 관련하여 직 , 간접적으로 이해관계 가 있는 <u>운수 • 운송사업체(조합,단체)</u> 중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 관련자를 제외한 교통에 관한 전문적 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위촉한다.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한 시 민(단체)대표 또는 일반시민 ------1. 버스운수사업체(조합), 택시운송사 〈삭 제〉 업체(조합, 지부)의 임、직원 2. 교통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〈삭 <u>제〉</u> 풍부하다고 인정한 시민(단체)대표 또는 일반시민 제7조(회의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제7조(회의운영) ① ~ ③ (생 략) ④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 - 직·간접적인 ------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에는 심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 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 ----- 심의에 ----할 수 없다. 〈신 설〉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 고.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. 출 석위원명, 심의내용 및 결과 등을 기 록하다. 제8조(효력)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제8조(심의결과 처리) 구청장은 위원회 사실행위로서 효력을 갖는다. 다만, 확인 의 심의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결정

불가 처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12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하여야 한다.	
제12조(수당 등)	
<u>범위</u>	